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 ·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7. 2. 28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동 조례안제5조제2항 중 통장의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점차 근로연령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상한연령을, 현행과 같이 65세로 수정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가. 안 제5조제2항 중 “30세이상 63세이하”를 “30세이상 65세이하”로 수정함.

나. 안 부칙 제1조(시행일)를 제1항(시행일)으로 함.

다.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 통장 및 반장의 위 · 해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토록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 ·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 ·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의 “30세이상 63세이하”를 “30세이상 65세이하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1조(시행일)를 제1항(시행일)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(통장 및 반장의 위 · 해촉에 관한 경과 조치) 2007년 4월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20세이상 30세미만의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수 정 안 대 비 표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연임</u> 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<u>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</u> 당연 해촉된다	제4조(통장의 임기)————— — <u>2회에 한하여 연임</u>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<u>위촉자격 상한연령을</u> <u>초과하면</u> —————.	제4조(통장의 임기) (개정안과 같음)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생략)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<u>20세이상 65세이하</u> 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신임이 있는 <u>활동적인</u>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————— <u>30세이상 63세이하</u>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③ ~ ④ (현행과 같음)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————— <u>30세이상 65세이하</u>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부칙 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에 관한 경과 조치) ①2007년4월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63세가 넘은 자는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한다. 다만 임기중 연령이 65세가 넘으면 당연 해촉된다 ② (생략) (신설)	부칙 ①(시행일) (개정안 제1조와 같음) 제2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에 관한 경과 조치) (삭제) ① ~ ② (삭제) ②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에 관한 경과 조치) 2007년 4월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20세이상 30세미만의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.